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5-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장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원 배지의 잦은 훼손에 따라 재질을 변경하여 제작하고, 행정안전부 권고(2018.05.18.) 준수를 위해 분실 시 유상 재교부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사유를 신고하고 지급받는 경우
자부담 조항 신설(제6조제3항)

나. 의원배지모형도 「규격」 내용 변경[별표 3]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년 2월 26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성동구 고산자로 266 (행당동), 성동구의회 의정팀

나. 문 의 처

○ 전 화: 02-2286-6452

○ 팩 스: 02-2286-5948

○ 이메일: yun0201@sd.go.kr